

##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7913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3.

제안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심사경과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	2205552	서삼석의원	2024.11.14.	-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‘25.2.18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
	2205635	이만희의원	2024.11.15	-제43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‘26.1.13.) 상정
	2204798	정부	2024.10.21	-제419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‘24.12.13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 회부 -제43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‘26.1.13.) 상정

가. 제431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1.13.)에  
서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  
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.

나. 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6.3.11.)에  
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

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농림축산식품법  
안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것으로 표시되었거나 수입통관  
과정에서 의심되는 우편물·탁송품 및 여행객이 신고한 휴대품에 대해  
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, 최근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객의 급증으로 검  
역을 거치지 않은 열대과일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  
이 증대되고 있음.

특히,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 시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
불구하고, 2023년 해외여행객의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은 13.1%에  
불과한 실정으로, 해외여행객 대상 금지식물 안내를 통한 사전 차단과  
검역물품 신고 의무화 등 식물검역 정보 안내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  
되고 있음.

이에 식물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우편물·탁송품의 외부 포장 및 상  
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,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  
른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며,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및 금지  
품 유통 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생  
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.

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,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하도록 함(안 제12조제10항 신설).
- 나.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기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양도·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3조의2 신설).
- 다.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‘정당한 사유’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(제41조제2항제2호 개정).
- 라. 무역항·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, 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(제45조의4 신설).
- 마.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시기를 명확하게 하여 집행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, 식물검역관의 소독·폐기 명령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된 사항을 정비함(안 제50조제3항제3호의3).

##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⑩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(이하 “금지품등”이라 한다)을 양도하거나 유통(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. 다만,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위험분석을 마친 금지품은 제외한다.
2.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
3.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
4.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
5.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격리재배대상 식물

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품등을 보유한 자에게 폐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종류 및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제6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·반송·회수·소독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2항제2호 중 “1년”을 “정당한 사유 없이 1년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

3의3.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(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)한 자

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4(식물검역 안내·교육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 관련 유의사항 및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의무 등(이하 이 조에서 “식물검역 정보”라 한다)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1. 「항만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

2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

3.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

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운송인”이라 한다)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4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

제48조제3호의3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제3호의4부터 제3호의6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3.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(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)한 자

제50조제3항에 제3호의3 중 “알리지”를 “지체 없이 알리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를 각각 제4호의4부터 제4호의8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3과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3. 제12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

6. 제45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품명 기재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적(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실는 것을 말한다)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

제16조(검역 결과 처분) ① ~ ⑤  
(생 략)  
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  
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 
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 
령으로 정한다.

제41조(등록취소 등) ① (생 략)  
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  
입목재열처리업자가 다음 각  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

- 4.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  
당되는 목재포장재
- 5.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  
배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격리  
재배대상식물
-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 
에 따른 금지품등을 보유한 자  
에게 폐기, 그 밖에 필요한 조  
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 
종류 및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  
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검역 결과 처분) ① ~ ⑤  
(현행과 같음)  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 
정에 따른 폐기·반송·회수·  
소독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 
사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41조(등록취소 등) ① (현행과  
같음)  
② -----  
-----  
-----

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3. ~ 7. (생략)

③ (생략)

제43조(포상금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-----  
-----
- 3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3조(포상금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

3의3.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(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

4. ~ 6. (생 략)

② (생 략)

<신 설>

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)

한 자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5조의4(식물검역 안내·교육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 관련 유의사항 및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의무 등(이하 이 조에서 “식물검역 정보”라 한다)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1. 「항만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

2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

3.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

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(이

제4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7. ~ 11. (생략)

제4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3의2. (생략)

<신설>

하 이 조에서 “운송인”이라 한다)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47조(벌칙)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

7. ~ 11.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벌칙)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
3의3.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



4의3. ~ 4의7. (생략)

5. (생략)

<신설>

④ (생략)

4의4. ~ 4의8. (현행 제4호의3  
부터 제4호의7까지와 같음)

5. (현행과 같음)

6. 제45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  
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 
에 따르지 아니한 자

④ (현행과 같음)